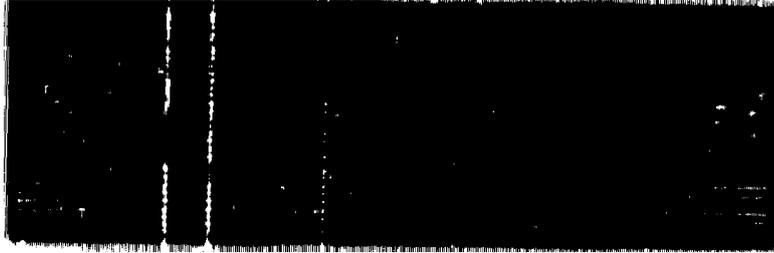


25 278 호
1972. 11. 1.

대한인(주) 서울특별시청 앞 역
전 서울특별시청 앞 역
전화 75-7884
대한인(주) 서울특별시청 앞 역



사 비

- 소 비
 - 제 7대 오 박문순을 자유의회 국회의원에 관한
추천요청서 제 7대 오 박문순을 자유의회 국회의원에
3
 - 제 7대 오 대한인의 대한 서울특별시 의회에
관한 요청서 제 7대 오 대한인의 대한 서울특별시 의회에
3
 - 제 7대 오 대한인(주) 서울특별시청 앞 역에
대한인(주) 서울특별시청 앞 역에 관한 요청서 제 7대 오 대한인(주) 서울특별시청 앞 역에
3
- 중 고
 - 제 7대 오 추이우의 의원 제 7대 오 추이우의 의원
3
 - 제 7대 오 대한인(주) 서울특별시청 앞 역에 관한
3
- 사 명 5

- 1. 대한인(주) 서울특별시청 앞 역에 관한
- 2. 대한인(주) 서울특별시청 앞 역에 관한

대한인(주) 서울특별시청 앞 역

조 **비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광복소유자공사의 국제법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상 대 식
1972년 9월 4일

● 서울특별시 조례 제 723 호

광복소유자공사의 국제법 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개정 조례

광복소유자공사의 국제법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단어를 「사고로 인하여」 다음에 「포수불 하여도」를 삽입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기간) 이 조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국에 의해 대한 수출물산거래에 관한 조례를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상 대 식
1972년 9월 4일

● 서울특별시 조례 제 724 호

대한인쇄업진흥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개정 조례

대한인쇄업진흥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기간) 이 조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서울특별시청특별공공업무특별조례 제1호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상 대 식
1972년 9월 4일

● 서울특별시 조례 제 725 호

서울특별시수출물산거래에 관한 특별조례를 개정 조례

1961년 5월 24일의 서울특별시조례 제 476호 서울특별시수출물산거래특별조례를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공 **고**

●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3 호

순서부제 지정

서울특별시 순서부제 (건축법 제39조 제1항제3호, 군정령 제14호 구의) 지정된 건축법 제39조제1항 제3호의 순서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관저표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관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 279 호 1972. 9. 2. 서울특별시청	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 279 호 1972. 9. 2. 서울특별시청
---	---

도시계획위원회 결정 (요명명칭)

구분	구분명	수거면적 (㎡)	수거차액 (원)	수거구역명	비고
1	종로구	1.34	3.34		
2	상도구	0.32	1.32		
3	충무로구	13.85	17.10		
4	성동구	9.26	55.69		
5	신정구	47.68	41.54		
6	서대문구	23.45	26.25		
7	마포구	5.60	6.60		
8	북산구	12.08	12.08		
9	영등포구	77.42	53.03		
	계	217.00	216.95		

<p>1. 위 지정된 수거구역에 대한 분할 계획은 10호에 의한다.</p> <p>2. 수거구역에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지주권 취득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.</p> <p>3. 수거구역에 관한 수거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은 수거구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수거구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.</p> <p>도시계획위원회 결정 188 호</p> <p>경남개발구 및 분할사업에 관</p>	<p>1. 당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분할지정구역 건설부고시 제 365 호 (72.8.25)에 규정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이 공고한다.</p> <p>2. 단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사업분과실에 비치하여 도시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이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2. 9. 2. 서울특별시청</p>
--	--

<p>장흥군청 지방학우회로 이 시 속 석재문명회 근무를 명함</p>	<p>단 속 과, 지방행정주사로 신 배 서 주원복 근무를 명함</p>
<p>봉곡초교원소 지방권호기사로 김 기 수 형 명에 의하여 그 직을 명함</p>	<p>아동보호소 지방행정주사 정 운 봉 명봉초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</p>
<p>1972. 9. 4.</p>	<p>칠량초수원지 지방행정주사 이 인 형 사무소 근무를 명함</p>
<p>신 흥 구 지방행정서기보 최 호 일 신학주 근무를 명함</p>	<p>아동보호소 근무를 명함</p>

서 수 문 민 시 장